

# 재입학 심의위원회 규정



## 한국항공대학교

##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 재입학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재입학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항공대학교 재입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재입학 신청자 자격 심의 및 재입학 허가
2. 재입학 제도 개선
3. 기타 재입학에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교무처장, 학생처장, 해당 학생 소속 대학장 및 학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회무를 통할한다.
3.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교무팀장이 이를 맡는다.
4.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